

의안번호	2125552
의 퇴 인	노웅래 의원
회 답 일	2023. 12. 14.
추 계 번호	23B482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의2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신설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1.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방법 및 결제정보 등에 대한 음성 안내 2.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성·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6조의2 신설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안 제46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지능정보서비스¹⁾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제공, 오류 발생 등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성·문자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제도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용역의 제공자로 하여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검증기준의 준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음성 안내 및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음

[표 2]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비교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편의제공 주체	무인정보단말기(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편의제공 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장애인 -장애(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
무인정보단 말기 이용 관련 조치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1.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방법 및 결제정	(법률 제15조제3항)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u>보 등에 대한 음성 안내</u> 2.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u>이용과 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성·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u>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u>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u> 5. <u>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 국수어·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u>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자료: 개정안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5,545대(2023년 11월 현재)이며, 이 중 ‘시각 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한 기기는 5,463대(전체 설치 기기의 98.5%)임
 -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행정안전부_무인민원발급기정보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설치·운영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을 정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도 “각 화면의 안내메시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안내기능(자막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개정안의 내용 중 장애인을 위한 음성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장애인 외에 고령자 등을 위한 음성 편의 제공 내용 및 방법 등을 현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장애인 및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강화를 위한 사업 현황

- (사업명) [세부사업]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일반회계, 1945-501)
[내역사업] 정보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웹·앱·키오스크에 대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제도 정비, 실태조사,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술 개발·지원
- (2023년 예산) 4,595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0백만원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앱, 키오스크)	300백만원
정보격차 실태조사	582백만원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3,350백만원
정보 접근성 인증평가 지원	163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